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중 소 기 업 협 동 조 합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난·사고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위해 폐업단계에 한정된 현행 공제사유를 확대하고, 가입자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극복을 위해 신규 확대되는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일부지급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을 추가하고, 추가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근거마련 (안 제37조 제1항 제5~8호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가. 주된 영업장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고는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다. 재난으로 직접적인 시설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영업장에서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6.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293조의5제1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596조제1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법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37조(공제사유 및 공제금의 지급) ①----- ----- ----- ----- -----.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5.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업장에 다음 각 목중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가. 주된 영업장이 전파 또는 반파되거나 유실되어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나. 주요 시설 및 자재 등이 파손되어 수리·구매하지 않고는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다. 재난으로 직접적인 시설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영업장에서 영업을 불가능한 경우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6.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293조의5제1항에 따른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동법 제596조제1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0조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지급을 청구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제도약과	
연 락 처	(044) 204 - 7859